

「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재우 의원 외 21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고,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설치운영 및 이용대상 (안 제3조~제4조)
- 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(안 제5조~제6조)
- 이용료 및 이용입장의 제한 (안 제7조~제8조)
- 행위의 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 (안 제9조~제10조)
-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(안 제11조)
- 위탁운영 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
 -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 -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- 「장애인복지법」
- 부서검토: 아동친화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고,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우리시의 아이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무더위 및 한파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고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보육지원, 출산장려, 인구유입 등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운영규칙 등 세부적인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·시행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